

1. 개정이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17557호, 2020. 10. 20. 공포, 1. 21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빈 점포의 활용 용도를 정하고, 시·도의 지원 계획 및 상인회 유형에 ‘골목형상점가’를 추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시·도의 지원계획 수립·시행(안 제4조 개정)

시·도의 지원계획, 시·군·구의 지역추진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유형에 기존의 ‘시장 및 상점가’ 외에 ‘골목형상점가’를 추가함
나. 빈 점포의 활용 용도(안 제8조의2 신설)

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용도를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위한 물류시설, 중장년층의 창업공간 등을 추가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7. 1. ~ 8. 1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상점가”를 “상점가(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,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빈 점포의 활용 용도)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”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위한 물류시설(창고·사무실 등)
2. 중장년층의 창업공간
3. 스마트팜(재배실·판매장)
4. 유통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 예술인의 창작공간
5. 그 밖에 빈 점포의 활용 용도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시·도의 지원계획 수립·시행)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<u>상점가</u> 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u><신 설></u>	제4조(시·도의 지원계획 수립·시행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상점가</u> (<u>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</u>)-----. <u>제8조의2(빈 점포의 활용 용도)</u> <u>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”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u> <u>1.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위한 물류시설(창고·사무실 등)</u> <u>2. 중장년층의 창업공간</u> <u>3. 스마트팜(재배실·판매장)</u> <u>4. 유통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 예술인의 창작공간</u> <u>5. 그 밖에 빈 점포의 활용 용도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</u>
<u>제8조의2 (생 략)</u>	<u>제8조의3 (현행 제8조의2와 같음)</u>